

2023년 하반기 검역해소품목 지원사업 국내공모 추진계획안

1. 사업목적

- ☐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을 검역조건 개선에 맞춰 초기 시장 진입 연착륙 지원
 - 국가와 품목별로 상이한 검역조건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 경감 및 소비자 반응 불확실성 해소 지원

2. 공모개요

☐ 대상국가 및 품목

-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
- 검역조건 변경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 * 참고 2

☐ 공모분야 : 오프라인 판촉마케팅

- 지원항목 : 국내 수출업체
- 지원항목 : 해외 판촉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 비용
 - 행사장 임차·설치비, 입점 수수료, 홍보·시식 관련 비용 지원
- 지원비율
 -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%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기업*도 허용하되 50% 지원
 -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함
 - 단, 판촉 대상 품목이 신선품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비율에 10%p 추가 지원하고, 유통업체 직접 연계(=바이어 매장)로 추진 시 집행비용의 100% 지원
- 사업의무액 : 배정예산의 100%이며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

따라 정산. 오프라인 시식 비용은 최소 10% 지출 필요 (최대 30%)

- * 시식 비용은 현지 방역수칙 상 시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항목 지출로 전용을 허용하며, 시식 비용을 10% 이하로 사용한 경우 미달 비율 정산비율에서 차감

○ 추진기간 : '23. 11. 30일 까지(행사시작일 기준)

- * 단, 사업자 선정 후 aT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조정 한 경우는 예외

□ 접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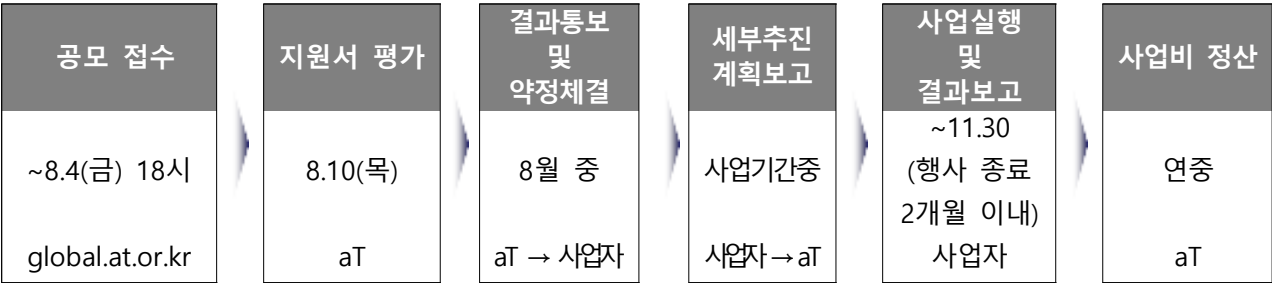
-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 : '23. 7. 24(월) ~ '23. 8. 4(금) 18시 까지
- 제출서류

- ① 지원신청서, 무역통계제공동의서(온라인)
- ② 사업자등록증
- ③ 2022년도 재무제표(미확정 시 2021년 재무제표 제출)

□ 선정계획

- 평가일정(안) : '23. 8. 10(목) 15시 / aT본사
- 평가위원 : 본사 주관 내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
 - 주관 부서(농임산수출부) 및 수출 유관부서 부서장 2명
 - * 담당 부서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차상위 직급자가 대리 참석 가능
- 평가방법 : 내부전문가 3인의 평가점수 평균 * 참고 3의 평가표 활용
- 선정기준 :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득점 사업 중 품목·국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고득점순으로 선정
 - * 사업대상 품목의 전년도 기준 수출실적이 5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, 검역이 타결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수출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평가위원 협의를 통해 선정 가능
 - **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내용, 행사규모 등에 따라 배정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

3. 추진일정[안]



참고 1 정산 / 지원기준

1. 공통기준

-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집행된 경비에 한함
-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,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시는 원본 대조필 날인
 - 각 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영수증 제출
 - 인보이스 등 사후 변동 가능 증빙제출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입금 또는 송금확인서 등 확정 증빙 첨부
-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
- 해외 현지 화폐 집행비용은 운영기간 동안의 KEB 하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송금 평균환율 적용
- 사업 관련 비품 구입은 소모품 구매만 인정하며, 자산 구입은 불인정
- 명시되지 않은 정산기준은 관련 세부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적용

2. 해외마케팅

① 오프라인 판촉

○ 지원항목

지원항목	세부내역	제출서류
임 차 관련비용	○ 판촉행사장 임차비 및 입점수수료 - 품목등록비, 점포Listing Fee 이외 단순 매출수수료는 제외	○ 유통업체 (매장)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(금액표시)
장 치 관련비용	○ 판촉관련 시식대,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임차비	○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
홍 보 관련비용	○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,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, 현수막, 전단지, 인터넷 배너 제작, SNS, 온라인 시식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에 집행된 비용 ○ 포인트+쿠폰, 배송료(온라인 시식용) ○ 증정품, 경품, 포인트+쿠폰은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20% 한도	○ 홍보내역 및 송금증 등 관련 증빙 ○ 제작실물 또는 실물사진 ○ 증정품 관리대장(수량명시), 사진 첨부 * 경품행사 진행시 사전에 행사계획 제출 및 협의 필요 ○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내역 및 관련증빙
시식행사 관련비용	○ 행사관련 홍보·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(통역포함) ○ 국가별 지원한도(1일/1인) 적용 - 일 본 : JPY25,000 - 동남아 : USD150 - 유 럽 : EUR250 - 중화권 : USD150 - 미 주 : USD250 - 기 타 : USD200 *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,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	○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, 업체 발행 증빙서류 - 판촉요원 이름, 근무매장, 근무일수, 지급액 등 * 인력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 가능 ○ 주관업체 직접고용 시,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 - 근무매장, 근무일수, 지급액, 근무자 서명 날인 -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사진
	○ 시식용 식품은 전체 배정승인 예산의 최소 10% 지출 (최대 30% 한도) ○ 시식 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가	○ 시식용 식품 증빙은 행사기간 동안 유통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(유통매장 확인필) 제출

지원항목	세부내역	제출서류
	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	*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○ 행사매장 시식행사 사진 첨부
상품개선	○ 패키지(재작업) 비용	○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, 송금증, 시제품 결과(사진, 규격 정보) ○ 유통매장에서 발행한 해당 제품 매출액 (행사기간 한정)
	○ 특화규격품 판매실적	- 상품명, 판매장소 사진, 매출액 등이 포함된 매출실적 * 현지 매장 정책 등으로 인해 발행 증빙이 불가할 경우 본사 사전 협의 필요
해외물류	○ 해외공동물류센터 → 내륙지역 냉장·냉동 운송비 ○ 미국(호접란) 서부·동부간 내륙운송료	○ 해외공동물류센터 출고내역 ○ 화물운송장(물품내역 포함), 운송업체 청구서(인보이스), 송금증(영수증)

* 지원항목 세부기준은 판촉행사 현지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본사 협의가 필요함

* 영수증의 수신자가 보조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어떤 관계인지 결과보고서에 명기

○ 사업의무액 관련 증빙

제출서류	내용
수출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증빙서	○ 국고지원액의 1배 이상의 수입신고서 (CIF 기준) - 유통업체 직접연계로 수입실적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약정된 국고지원액 1배 이상의 매출의무액(단, 행사기간 한정) 부여 - 공식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불가피한 경우 사유서, 수출신고필증 제출) ○ 지원대상이 국내수출업체인 경우, 국고지원액의 1배 수출액 (FOB 기준) - 사업의무액 증빙은 수출신고필증 제출(구매자에 바이어 명시 필수)

○ 수출입실적 인정기간 및 환율적용

수출입실적 인정기간	○ 수입실적 : 행사기간 전후 30일 + 행사기간 * 양란(분화) : 행사기간 전 150일 + 행사기간 + 행사 후 30일 ○ 수출실적 : 국가별 운송기간 + 행사기간 전후 30일 + 행사기간<table><tr><td>국 가 별</td><td>일본</td><td>중화권/동남아</td><td>미주</td><td>유럽 및 기타</td></tr><tr><td>운송기간</td><td>7일</td><td>15일</td><td>30일</td><td>40일</td></tr></table>	국 가 별	일본	중화권/동남아	미주	유럽 및 기타	운송기간	7일	15일	30일	40일
국 가 별	일본	중화권/동남아	미주	유럽 및 기타							
운송기간	7일	15일	30일	40일							
환율 적용	* 양란(분화) : 국가별 운송기간 + 행사기간 전 150일 + 행사기간 + 행사 후 30일 ○ 해외판촉 행사기간 동안의 평균환율* 적용 *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(보내실 때), 기준으로 도출										

※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(본사)의 승인을 받아야하며,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표기 후 제출

※ 모든 증빙 및 제출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

참고 2 검역해소 품목지원사업 지원 국가별 품목

국가	검역 해소 품목(타결연도)
EU	• 감귤류('21/개정)
이스라엘	• 입병재배버섯류7종('20), 배('21/개정)
베트남	• 토마토('20/개정), 감('21/개정)
필리핀	• 딸기('21), 사과·배·단감·감귤('22/개정)
태국	• 감·배·사과·포도·멜론(참외포함)·복숭아·감귤('21/개정)
대만	• 참다래·사과·복숭아('21/개정)
호주	• 배·감('19/개정), 딸기('21/요건완화), 포도('21/개정), 접목선인장('22/개정)
뉴질랜드	• 감귤류('22)
인도	• 배('21/개정), 사과·모과('21)
UAE	• 과실류(배, 사과, 감귤, 단감, 포도, 수박, 복숭아, 참외 등), 인삼, 버섯류 등
우즈베키스탄	• 사과·배('22)
미국	• 감귤류·후지사과·감·포도·토마토·참외·오이·호박·수박('19/요건완화), 당근('20),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('21/개정)
캐나다	• 토마토('20), 포도·딸기('21/개정), 사과·배('21/요건완화)
멕시코	• 입병재배버섯류5종('19), 배('22/개정)
페루	• 토마토·배('21/개정), 감('21/요건완화)
브라질	• 채소종자8종('22/요건완화), 배('21/개정)
아르헨티나	• 배('21/개정)
칠레	• 감·사과·배('21/개정)
콜롬비아	• 배('21)

* 파프리카 등 대중국 수출품목은 대중국 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제외

** UAE는 수입허가제도 운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간한 '2022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령'에 따라 수출가능품목으로 대체

참고 3 2023년 검역해소품목 지원 선정 평가표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				점수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1. 사업 및 품목의 타당성 (30점)	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절차, 추진시기, 예산집행의 적정성 - 품목의 현지시장 유망성	30	24	18	12	6	
2. 수출 연계성 (30점)	- 홍보를 통한 시장 확대 또는 개척 가능성 - 타겟형 홍보로 실수출과 연계 가능성	30	24	18	12	6	
3. 사업의 효과성 (20점)	- 타깃소비층 모객 계획 - 언론, 온라인 홍보확산 효과	20	16	12	8	4	
4. 사업의 참신성 (20점)	창의성, 신유통 활용 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	20	16	12	8	4	
합계 (100점)		총 점					